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2018년 5월호

## Contents

### Crowe Global 소식

- 글로벌 브랜드 변경 발표

### 회계정보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 1117 호) 제정 의결
-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 세무 및 법률정보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2018년 5월호

Crowe Global  
소식

글로벌 브랜드 변경 공지

Crowe Global 브랜드 변경 공지

□ 2018년 5월 9일, 세계 8위 (아시아 6위)의 글로벌 회계 네트워크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은 네트워크 명칭을 2018년 6월 4일자로 Crowe Global 로 변경함을 공지하였습니다.

브랜드 개편으로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은 Crowe Global로 명칭을 바꾸고, 전 세계적으로 130개 국가에 220 개 이상의 회원사가 세계적으로 Crowe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개편은 네트워크의 통합된 특성은 물론 그 가치와 핵심목표를 점차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화와 국경 없는 현대 비즈니스환경에서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네트워크의 공유지식과 글로벌 리소스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Brand에 따라 한울회계법인은 아래와 같이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Brand 변경과 더불어 저희 법인의 이메일 도메인과 홈페이지 주소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메일 도메인 @crowe.kr  
홈페이지 www.crowe.kr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316-6600(교) 또는 6622(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제정 의결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5.25]

개요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했습니다.(2018.5.25.(금))

○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임

국제회계기준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제정취지

1. 제정 취지

□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부재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4 호 '보험계약'은 과도기적 회계기준으로서 다양한 실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보험자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움

- ① 국가별·보험사별로 서로 다른 회계처리
- ② 타 산업과 비일관된 회계처리
- ③ 과거 정보를 이용한 보험부채 측정
- ④ 알기 어려운 이익 정보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보험자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 추구

주요내용

2. 주요 내용

(1) 인식과 측정의 단위

□ 발행한 계약을 개시 시점에 집합으로 통합하여 이 집합에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

○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나눔

\*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예: 동일 상품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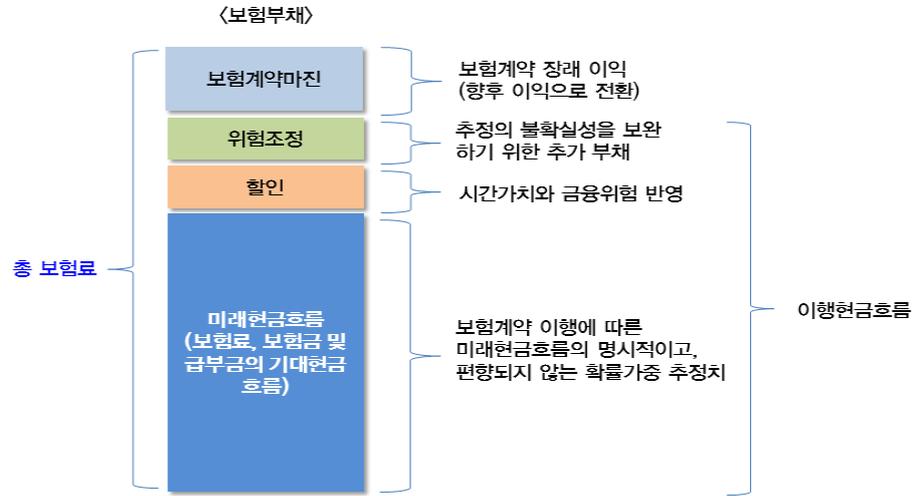
- ① 손실부담계약 집합
- ②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집합
- ③ 포트폴리오 내 나머지 계약 집합

(2) 측정

□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3 가지 모형을 적용

○ 일반모형: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으로 측정

<보험부채 측정 일반모형>



-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 집합의 이행에 직접 관련된 예상 미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예: 보험료, 신계약비, 보험금, 보험금지급관련비용, 계약관련 행정비용 등)의 현재가치와 위험조정
- 위험조정: 비금융위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
- 보험계약마진: 보장기간 동안 보험보장을 제공할 때 회사가 얻게 될 이익

o 보험료배분접근법: 수취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는 단순 모형(다음의 경우 선택 가능)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즉, 보장기간 중 만료되지 않은 기간과 관련이 있는 의무)

- 1 일반모형으로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
- 2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내임

o 변동수수료접근법: 일반모형과 유사하게 측정하나 시장변수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

- 직접참가특성(기초항목의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이 있는 보험계약에 적용

(3) 후속 측정

가. 보험부채의 후속 측정

□ 매 보고기간말 보험부채는 보험보장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나타내고, 보험부채의 감소는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험보장과 서비스 제공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로 측정

- 1 잔여보장부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② 발생사고부채: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나.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

□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 집합에서 제공한 보장서비스를 반영하여 인식

- (집합 내 보장단위 식별)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금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
- 기말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는 보장단위 각각에 배분
-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4) 표시

□ (재무상태표 표시 상의 변경사항)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로 구분하여 간소하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4 호)

재무상태표	
<b>자산</b>	<b>부채</b>
재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이연신계약비	미경과보험료
미수보험료	지급준비금
보험계약대출	
	<b>자본</b>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재무상태표	
<b>자산</b>	<b>부채</b>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부채
	<b>자본</b>

□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상의 변경사항) 보험수익은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수취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비보험사와 보험사간의 일관된 표시로 비교가능성 증가
  - 보험수익에서 투자요소 제외
- 보험사 이익의 원천 정보 제공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4 호>

(포괄)손익계산서
<b>영업수익 (XXX)</b> (수취한)보험료수익 XXX 투자수익 XXX
<b>영업비용 (XXX)</b> 보험부채전입액 XXX 지급보험금 XXX 사업비 XXX 신계약비상각액 XXX 이자비용 XXX
<b>영업이익 (XXX)</b>
<b>영업외손익 (XXX)</b>
<b>당기손익 (XXX)</b>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포괄)손익계산서
<b>보험수익 (XXX)</b> 예상보험금 및 사업비 XXX 보험계약마진 상각 XXX 위험조정 상각 XXX
<b>보험서비스비용 (XXX)</b> 실제보험금 및 실제사업비 XXX
<b>보험서비스결과 (XXX)</b>
<b>보험금융손익 (XXX)</b> 투자수익 XXX 투자비용 XXX
<b>당기손익 (XXX)</b>

시행일

3. 시행일

□ '21.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조기 적용) K-IFRS 제1117호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한다면 허용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4.6]

개요

<개요>

◇ 금융위는 금년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17.10.30, 공포)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감대상기준

□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바뀌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 외부감사 대상 기준\*(비상장사)을 선진국 방식으로 전면 개편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중 3개 이상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이 자산,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추어도 외부감사의무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 등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

○ 유한회사에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감사결과는 모두 공시

-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구현

감사인지정제 확대

□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합리화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함께 높여나가겠습니다.

○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가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본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운영

- 일정 요건\*을 갖추어 감리를 신청한 회사로서 감리 결과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약속

○ (시행령외 사항) 감사인 지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회계기준 해석 제공 확대, 교육시스템 구축, 감독집행 선진화 등 추진

- 아울러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감사인의 권한남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근절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과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화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이 높아집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

- 감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는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외부감사의 이행 상황을 종합평가하는 등 對 감사인 관리업무를 확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회계부정 적발. 조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책임 및 업무 처리 절차를 회사 내규에 반영

**회계감독선진화**

□ 제도 개선과 함께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도 선진화하겠습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제재’ 위주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오류의 適時 수정’을 활성화
  -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심사(review)”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과 대화, 정정 지도(guide)를 해나가는 감독방식 도입
- 회계법인의 경영공시무를 확대하여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이행현황 등을 대외 공개
  - 수많은 회사에 대한 감리보다 회사를 감사(audit)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효율성 제고
-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 도모
  - 특히 회사와 주주에 피해를 끼친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 등)의 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에 과징금을 부과
  - 과징금 가중. 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적극 고려

**주주권행사 활성화  
여건조성**

-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합니다.
  - 3월말 정기주총 집중 해소를 위해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4월에도 주총(‘벚꽃 주총’)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스튜어디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
  - 비상장사인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

**외감법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新 외부감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 개정법률 내용 >

**외부감사대상  
기준 개선**

- ◇ (회사 유형)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추가
  -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 ◇ (구체적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함

주요 개정사항	현재	개정내용
외감대상 회사 유형	주식회사	(추가) “유한회사”
외감대상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수	(추가) “매출액”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도 고려

□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범위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다수의 IFRS 도입 국가(EU, 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2018년 5월호

- 외부감사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선진국 방식과 유사)
  - (현행) i) 자산이 120 억원 이상이거나, ii) 자산이 70 억원이면서 부채 또는 종업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중 어느 하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외감대상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
  - (개선) 원칙상 모든 회사가 외감대상이며, 4 개의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 개를 충족하는 경우(소규모 회사)는 예외 인정
    - 단,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은 예외가 아님
    - 각 기준의 규모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되, 외감대상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
    - 변경된 기준은 '19.11.1 일부터 시행 예정

□ 유한회사 형태의 일부 투자기구(vehicle)는 외부감사법 적용 제외

- (현행)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은 외부감사의무를 면제
- (개선)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및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회사(유한회사) 등도 개별법에서 별도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의무를 면제

## 감사인 지정제 확대 2.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추가

<개정법률 내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을 선임
  -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시행령상 예외사유를 법률상 예외사유와 조화롭게 설정

□ 법률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증선위 감리를 회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해 허용

- (요건)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약속한 회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또는 검토) 의견은 지정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연속 적정이어야 함 (의견 작성방법은 증선위가 정함)
  - (절차)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함
    - 증선위는 감리를 신청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과거 재무제표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반려 가능
    - \* 최근 6년간 재무제표 심사(review) 과정에서 중요한 수정공시를 했는지 여부
- ⇒ 해당 감리의 종결시점까지는 지정이 유예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종결시점부터 6년간 지정 제외

나.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

<개정법률 내용>

◇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지정대상 회사가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제 적용시점 조정 근거 마련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에서 고시)

□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설정

○ i) 상장사 감사인, ii) 그 밖에 감사업무에 있어 중대한 흠결(증선위가 정하는 수준 이상의 조치)이 없는 회계법인에 한정

○ 단,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감사인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를 제한

\* (예) 회사에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요구한 경우 등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 감사인 지정은 행정처분임에도 현재 사전 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상태

○ 지정예정 내용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을 변경

\* (예) Big4 수준 감사인 지정, 지배. 종속관계인 경우 동일 감사인 지정 요구 등

□ 그 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고시

다. 직권지정대상 범위 확대 등

법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li> <li>재무상태가 취약한 회사 □ 3개연도 연속 영업이익 또는 영업현금흐름 &lt; 0 □ 3개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 &lt; 1</li> <li>일정 요건 하에서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 허용 등</li> </ul>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경영 미분리 회사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li> </ul>
시행령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선위에의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li>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경우</li> <li>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증선위에 미제출한 경우</li> </ul>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진 외국시장(뉴욕, 런던, 동경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에 상장된 회사를 지정제의 예외로 하는 규정 삭제 * 이유: 선진 외국시장 상장이 회계공신력을 보장하지 않음</li> <li>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흡한 경우 지정하는 규정 삭제 * 이유: 내부회계관리 미흡으로 감사의견 제시하면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이해상충) → 공정한 내부회계관리 감사를 저해할 우려</li> </ul>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

3.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내부규정”과 “담당자”로 구성)

<개정법률 내용>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효성 확보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준수의무를 시행령에 명시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에 소홀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비협조적인 경우에 감사인의 감사계약해지를 허용
  - 일정 기간(예: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감사계약해지 가능(단, 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함)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관련하여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보고서 작성, 공시를 의무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회계정보 공신력 제고에 기여했는지를 평가
-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평가
- 평가 관련 감사위원회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논의내용 등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사항 >

구분	현재	추가 규정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li> <li>▪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li> </ul>	<p>&lt; 예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b>감사위원회</b> 대상 교육</li> </ul> <p>&lt; 사후조치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사위원회</b>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li> <li>▪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사위원회</b>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li> <li>▪ 평가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li> </ul>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변경 절차</li> <li>▪ 회계정보 작성, 공시 프로세스</li> <li>▪ 회계정보 작성, 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li> <li>▪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처리 통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ul>

□ 증선위의 감독 강화

- 증선위 감리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
  - (예시)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했는지를 감사위원회가 평가할 의무 등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자산규모 2 조원 이상인 회사부터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나. 감사인 선임. 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 ◇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준수할 것을 의무화

- (기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절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
  -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회의별 논의결과 등을 문서화

□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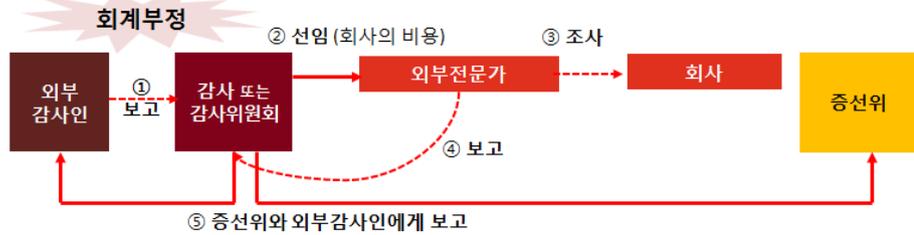
○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

다.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조치 책임 구체화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조치 책임 및 관련 활동에 대한 회사의 지원의무\* 신설

\* 회계부정 관련 감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비용 등 제공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선임 등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자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회계부정 적발. 조치 관련 감사위원회와 회사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

4. 증선위의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가. 회계감독시스템 개편

<개정법률 내용>

- ◇ 재무제표 감리와 품질관리감리. 평가 업무를 법률에 명시

현재	추가 규정내용
1. 감사보고서 감리	1. 감사보고서 감리 2. 재무제표 감리 3.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및 평가
2.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令: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규정)	4.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심사(review) 실시

○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제재 위주의 기존 감독방식에서 適時 오류수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투자자 보호 및 감독 효율화 목적)

\*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오류 정정 유도 절차, 정밀조사 전환 요건 등 세부사항은 「회계감리 선진화 TF」(長: 증선위원)에서 구체적 방안 마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점수 및 감리대상 선정 등에 활용

나.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제재 강화  
<개정법률 내용>

◇ 품질관리감리의 감독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 및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담당이사의 제재근거 신설

◇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 신설(공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을 확대 1)하고 수시보고제 2) 신설

1) (기존) 회계법인 상호, 사업내용, 재무 관련 사항 등(추가) 품질관리 관련 정보, 이사의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

2)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은 경영 등에 중대한 사건 발생시 증선위 보고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수시보고 절차 및 방법 등을 총리령에 위임

□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강화

○ 감사품질 관련 주요 사항\*은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공시 (가칭 「투명성 보고서」)

\* 임직원 성과평가 시 품질관리 비중, 감사인력 보수 수준, 전문성 강화 정책 등

○ 수시보고 사항 : 회계법인 이사의 기소사실, 외부감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등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및 개선권고내용 이행결과를 모두 공개

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개정법률 내용>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 배

\* 2018 년도 결산서류부터 적용됨

□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기본 과징금\*\*(가중. 감경 전의 과징금)을 법률 상한(위반금액의 20%)의 30% 이상으로 설정

\* 사전계획, 공모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회계부정을 행한 경우

\*\* 대우조선 件(고의 분식금액 약 5 조원) 적용시 : 45 억원 → 3 천억원 수준

○ 고의성. 위반금액 등 판단에 필요한 양형기준(금융위 규정)을 구체화

□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

□ 과징금 가중, 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시장질서 확립방안 5. 기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방안

가. 주주총회 활성화 지원

□ (현황)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들은 대부분 3월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집중도도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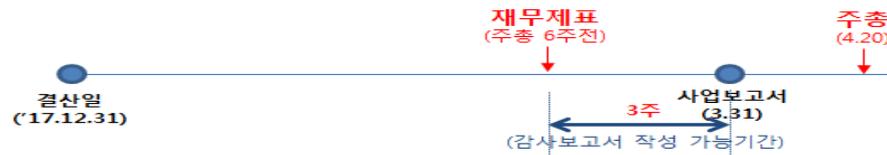
\* 주총 개최기업 수가 많은 3월에 주총을 개최한 기업 비중(한국 '17, 외국 '14): 한국(70.6%), 일본(48.5%), 미국(10.3%), 영국(6.4%)

○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주총 6주전”으로 주총일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

- 감사보고서 작성기간(5주 이상) 확보 및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제출기한(3.31) 준수를 위해 주총이 3월말에 집중되는 경향 (case 1)



- 4월 중순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제출기한(주총 6주전)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첨부) 제출기한에 가까워져 감사보고서 작성기간이 줄어들게 됨 (case 2)



□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31) 이후 주총이 개최되는 경우에 한해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주총일과 분리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전”으로 변경

○ 아울러 같은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현재: 주총 1주전)도 주총일과 분리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전”으로 변경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31)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작성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4월 주총 개최를 유도

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 (현황) 개정법률에 직권지정 사유로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 신설

□ (개선)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로 한정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 주식 보유량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 고려

2018년 5월호

##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현황) 현재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도 연결대상)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제외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

□ (개선) 일반회계기준 적용 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포함

## &lt;향후 추진계획&gt;

## &lt;향후 추진계획&gt;

□ 규제위 사전협의(진행 중) 후 시행령안(조문) 입법예고(4월 중순)

□ 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월말)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과징금 등 회계부정 제재 양형기준 등

□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 마련 (~9월, 연구용역 진행중)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품질관리감리 확대, 상장예정 및 신규 상장법인 회계감독 효율화 등

□ 표준감사시간 공표, 회계감사기준\* 개정 (한공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등 반영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21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18. 5.17.(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수정이유> 감면수준 적정화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연령) 15~34세(시행령)</li> <li>- (감면율) 100%</li> <li>-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li> <li>- (감면기간) 취업 후 5년간</li> <li>- (적용기한) '21.12.31.</li> <li>- (적용시기) '18년 소득분부터</li> </ul> </li> <li>* 취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감면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감면율) 90%</li> <li>- (좌동)</li> </ul> </li> </ul>

2. 청년·생계형 창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6)

<수정이유> 비수도권 창업 우대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연령) 15~34세(시행령)</li> <li>-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이·미용업, 수리업 등 31개 업종</li> <li>- (감면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세액 감면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감면율)</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생계형*</th> <th>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과밀 외</td> <td>청년</td> <td>5년 100%</td> </tr> <tr> <td>과밀 내</td> <td>청년</td> <td>5년 100%</td> </tr> </tbody> </table>	구분	생계형*	감면율	과밀 외	청년	5년 100%	과밀 내	청년	5년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생계형*</th> <th>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과밀 외</td> <td>청년</td> <td>좌 동</td> </tr> <tr> <td>과밀 내</td> <td>청년</td> <td>5년 50%</td> </tr> </tbody> </table>	구분	생계형*	감면율	과밀 외	청년	좌 동	과밀 내	청년	5년 50%
구분	생계형*	감면율																			
과밀 외	청년	5년 100%																			
과밀 내	청년	5년 100%																			
구분	생계형*	감면율																			
과밀 외	청년	좌 동																			
과밀 내	청년	5년 50%																			

2018년 5월호

## 12월말 법인의 세무관련 자료 제출기한

## 세무신고 안내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7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2018년 6월 30일까지 다음의 세무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국조법 §11 및 국조법시행령 §21의2)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는 국내지배기업\*<sup>1</sup> 및 국외지배주주\*<sup>2</sup>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국적기업그룹에 해당하는 국외지배주주가 본인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국내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재지 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리 제출된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정상교환되는 경우 국내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8년 6월 30일)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

(\*2) 국외에 있는 최종 모회사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1.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금액
2.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 유로

##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상증법 §45의3 및 상증법시행령 §34의2)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8조 제1항, 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말이 신고기한).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증세법 제69조).

###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국조법 §34 및 국조법시행령 §49)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무예규  
판례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서면-2018-부가-0718, 2018.04.30)

  - 의약품 생산제조업체(‘갑’)가 공급 상대방인 병원에 대한 영업조직과 영업망이 부족하여 의약품판매업체(‘을’)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은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환자의 의약품 수요가 있는 경우 병원→‘을’→‘갑’의 순서로 의약품 주문이 이루어지나 의약품은 ‘갑’이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고, ‘갑’은 ‘을’에게 운송비를 청구함.
  - ‘갑’은 의약품을 제조 및 운반하고, 재고관리 및 채권회수, 가격결정 등은 ‘을’의 책임 하에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지며 ‘갑’은 ‘을’에게 공급, ‘을’은 병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을’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이하 ‘판매활동대행용역’)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로 ‘갑’에게 공급가액의 일정률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또한, 의약품 목표판매 수량을 설정하여 ‘을’은 ‘갑’의 의약품 판매목표달성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매월 공급가액의 일정률의 ‘마케팅활동용역 수수료’를 받음. ‘을’은 미디어 홍보 활동,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 브랜드 계획, 브랜드 및 마케팅 실행방안 등 마케팅활동 세부내역을 수행함.
  - 이러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 및 ‘마케팅활동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의약품생산업자가 의약품판매업체와 의약품 공급계약 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판매활동대행용역 및 마케팅활동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대가에 대하여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04.26)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